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출일자 : 2015.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대구광역시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화원동산을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그 근거를 대상사업에 명시하고자 함.

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공무원 파견 범위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제19조제1호의 대상사업에 화원동산을 추가 규정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제33조의 공무원 파견범위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100분의 5의 범위로 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4. 10. ~ 4. 3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3조 중 “10분의 1의 범위”를 “100분의 5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명(제19조 제1호 관련)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 달성문화센터
○ 한일우호관
○ 사문진 역사공원
○ 비슬산자연휴양림 및 화원자연휴양림
○ 하천구역내(하빈지구) 체육시설물
○ 금호강 고수부지내 체육시설물
○ 화원명곡체육공원
○ 달성강변야구장
○ 달성종합스포츠파크(달성국민체육센터, 현풍전천후 게이트볼장)
○ 공공체육시설(화원게이트볼장, 군민운동장, 다사체육공원, 가창체육공원, 군민체육관)
○ 공원관리(성서5차, 테크노폴리스)
○ 동네체육시설
○ 화원동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 _____ _____ _____ _____ __ 100분의 5의 범위_____ _____.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 · 운영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은 정원의 5%이내에서 한시적 운영